

제2025-81호 2025년 9월 8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 화 합 열 린 도 시 인 재 육 성 산 업 도 시 문 화 예 술 복 지 도 시 해 양 관 광 휴 양 도 시 기 후 변 화 선 도 도 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1
○ 여수시 고시	제2025-412호	2025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2
○ 여수시 고시	제2025-413호	도로명 주소 부여폐지	5
○ 여수시 고시	제2025-41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6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666호	2035년 여수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11
○ 여수시 공고	제2025-2673호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 제거	12
○ 여수시 공고	제2025-2675호	보상계획 공시송달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
○ 여수시 공고	제2025-2681호	도로지정(변경) 「우두리 산 129-1번지 외 2필지 상 건축허가 관련」	21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680호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3
○ 여수시 공고	제2025-2684호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4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기간	점용·사용 목 적	승인받은 자		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2024-27 (2024.6.7.)	여수시 남면 유송리 653-1번지 일원	2024. 6. 7. ~ 2054. 6. 6.	남면 송고마을 방파제 보강공사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338	416

2025. 9. 5.

여 수 시 장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25. 11. 1. ~ 2026. 5. 15.

2.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 입 산 통 제 : 10개산 2,351ha
- 등산로 폐쇄 : 4개구간 6.5km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10개산 (20개소)				1,718필지	2,351.2	
봉황산	여수시	돌산	신복리	산75외 177필지	160.8	
황새봉	여수시	소라	봉두리	산205외 70필지	190.6	
수암산	여수시	율촌	가장리	산4외 39필지	145.1	
수암산	여수시	율촌	취적리	산220외 21필지	103.5	
고봉산	여수시	화양	화동리	산264외 46필지	87.3	
고봉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349-1외 23필지	24.4	
봉화산	여수시	화양	장수리	산172외 35필지	83.4	
비봉산	여수시	화양	옥적리	산142외 114필지	204.9	
비봉산	여수시	화양	창무리	산58-11외 17필지	63.5	
비봉산	여수시	화양	용주리	산220외 8필지	32.9	
비봉산	여수시	화양	이천리	산46-1외 19필지	21.7	
비봉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376-5외 13필지	22.7	
전봉산	여수시	주삼		산1-1외 42필지	53.4	
전봉산	여수시	봉계		산25외 6필지	41.1	
가마봉	여수시	소라	대포리	산40외 197필지	340.0	
서이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1외 395필지	253.7	
서이산	여수시	화양	서촌리	산103외 131필지	139.3	
제석산	여수시	신덕		산1외 23필지	40.4	
제석산	여수시	상암		산167외 54필지	49.4	
제석산	여수시	낙포		산12외 268필지	293.1	

□ 등산로폐쇄 지정현황

산 명	소 재 지			구 간	거리 (km)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2				4개 구간	6.5	
현천뒷산	여수시	소라	현천	국사암→정상	2.0	
	여수시	소라	현천	국사암→약수터→정상		
부 암 산	여수시	오천		호명고개→정상	4.5	
	여수시	신덕		신덕→정상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5.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25. 9. 5.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신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신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시설의 명칭	부지면적(㎡)	위 치	비 고
227	어린이공원	신기어린이공원	3,609	신기동 3번지 일원	여수시 고시 제2022-200호

2. 공원이정 및 결정현황

- 공원이정 및 조성계획 결정 : 2022. 06. 02. (여수시 고시 제2022-200호)

3. 법적 검토사항

- 변경 공원이시설률 : 53.0%(법정 60%미만)
- 변경 공원이녹지율 : 47.0%(법정 40%이상)
- 경미한 변경사항 : 시설부지면적 변경률10%미만으로 경미한변경 해당

* 금번 변경률0.2%

나. 공원이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원이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m²)		건 축 면 적(m²)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609	3,609	51	58	51	58	
시 설 종 류	소 계	1,923	1,912	51	58	51	58	감) 11m² ·시설율 53.2% → 53.0%
	도 로 · 광 장	1,202	1,148	-	-	-	-	도로 및 광장
	편 익 시 설	67	-	35	-	35	-	화장실 1층 제외
	유 희 시 설	419	419	-	-	-	-	조합놀이대 등
	운 동 시 설	160	160	-	-	-	-	운동기구 3개
	휴 양 시 설	75	75	16	16	16	16	파고라 1개소
	급 수 시 설	-	110	-	42	-	42	비상급수시설 1개
녹지 및 기타		1,686	1,697	-	-	-	-	증) 11m² ·녹지율 46.8% → 47.0%

1-1. 조성계획(변경) 세부시설 조서

1) 도 로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283	-	-	
소로 1-1	129	-	-	진입로 1
소로 1-2	60	-	-	진입로 2
소로 1-3	60	-	-	진입로 3
소로 1-4	34	-	-	순환로
소 계	349	-	-	기정
	345			변경
산책로 ①	10	-	-	-
산책로 ②	8	-	-	-
산책로 ③	3	-	-	-
산책로 ④	162	-	-	-
산책로 ⑤	38	-	-	-
산책로 ⑥	38	-	-	-
산책로 ⑦	25	-	-	-
산책로 ⑧	41	-	-	-
산책로 ⑨	24	-	-	기정
	20	-	-	변경

2) 광 장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70	-	-	기정
	520	-	-	변경
진입광장	309	-	-	기정
	259	-	-	변경
중앙광장	261	-	-	

3) 편익시설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7	35	35	기정
	-	-	-	변경
화 장 실	67	35	35	기정 1동× 35㎡, 1층
	-	-	-	변경

4) 유흥시설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19	-	-	
어린이놀이터	419	-	-	
조합놀이대	-	-	-	1개소
언덕놀이터	-	-	-	1개소

8) 운동시설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0	-	-	
운동시설	160	-	-	
운동기구	-	-	-	3개소

9) 휴양시설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5	-	-	
휴게소	75	-	-	
파고라		16	16	4m×4m 1개소

9) 급수시설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	-	기정
	110	-	-	변경
비상급수시설	-	-	-	기정
	110	-	-	변경 1동× 42㎡, 1층

11) 녹지시설

시설의 세분	부 지 면 적 (㎡)	시 설 규 모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86	-	-	기정
	1,697	-	-	변경
녹 지	1,686	-	-	기정
	1,697	-	-	변경

「2035년 여수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2035년 여수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1. 공청회 목적 : 2035년 여수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09. 24.(수) 14:00

나. 장 소 : 여수시청 회의실(3층)

3.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 개요

가.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35년(기준연도 2024년)

나. 공간적 범위 : 여수시 관내 공업지역(A=14.3km²) ※ 산업단지 등 제외

다. 주 요 내 용 : 공업지역 활성화 목표 및 전략, 유형별 관리 방안 등

4. 기타사항

가. 공청회 개최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4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09. 24.(수) ~ 2025. 10. 10.(금)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본청사 1층)

라.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담당자 전자우편(kakao2014@korea.kr) 또는 팩스(061-659-5833)로 제출 가능

마. 제출양식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양식 첨부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 제거 공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동항 내에 방치되고 있는 무단 적치물로 인해 어항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적치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8. ~ 2025. 9. 19. (12일간)
2. 위 치 : 봉산동 96-6, 봉산동 100-1, 국동37-542 등 (국동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그물, 폐목재, 철제구조물 등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적치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남산동 30-9		
적치물 종류	그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봉산동 96-7		
적치물 종류	폐목재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봉산동 96-6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봉산동 96-6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봉산동 96-6		
적치물 종류	철재 구조물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봉산동 96-6		
적치물 종류	철판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국동 1082-44		
적치물 종류	드럼통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2673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9월 1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 · 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 · 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8.

여 수 시 장

- 1. 사 업 명 :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 2. 사업구간 : 여수시 상암동 1275-4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여수시 시청로 1)
- 4. 공고기간 : 2025. 9. 8. ~ 2025. 9. 22.(15일간)
-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6. 공시송달 대상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여수시 상암동	1269-6	대	5	여수시 상암동 ****	이*복			
2	여수시 상암동	1238-7	도	10*323/341	여천군 삼일읍 상암리 ***	천*수			
				10*18/341	여천군 삼일읍 상암리 ***	장*문			

- 7. 보상계획
 - 가. 보상의 시기: 열람.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나. 보상절차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름
- 8. 기타
 -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지정 (변경)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29-1번지 외 2필지 상 건축허가 변경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29-1번지 외 2필지
- 2. 도로면적 : 471㎡
- 3. 도로길이 : 현황도 참조
- 4. 도 로 폭 : 현황도 참조
-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02	
	돌산읍 우두리	519-1	전	896	25	
		산129-1	임	7,339	77	
변경	계				471	
	돌산읍 우두리	519	전	717	94	
		519-1	전	896	298	
		산129-1	임	7,33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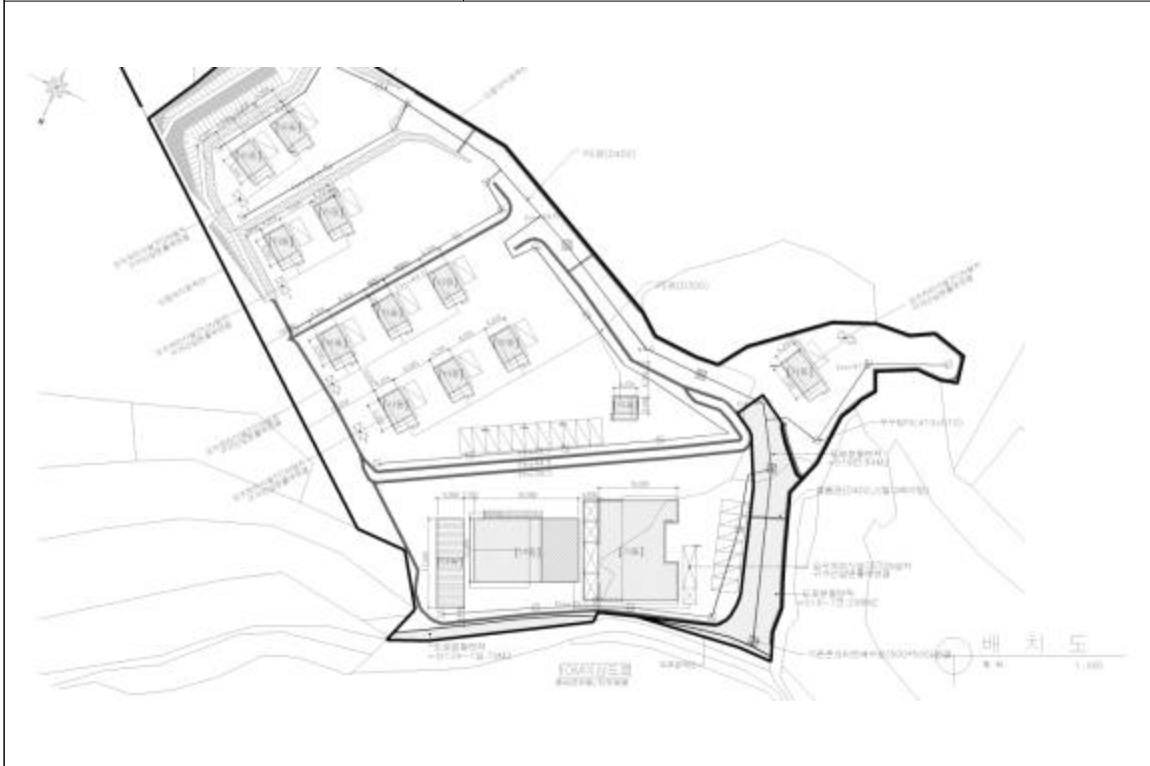
※ 당초 도로지정: 2024. 1. 29.

-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5. 9. 8.

여 수 시 장

현 황 도



공 고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접종 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유사 성격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현행)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조례명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수정(안 제1조)

- 선택예방접종 종류 명시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2조)
- 별도 제정·관리되고 있는 유사 조례 통·폐합으로 각 조문별 내용 정비
- 제명 변경 및 유사 조례 통·폐합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3. 전부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입법 예고기간 : 2025. 9. 5. ~ 2025. 9. 25. (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9월 2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제출처 : 여수시장(건강증진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47, 2층 건강증진과(우 59675)
 - 팩스 : 061-659-5840
 - 전자우편 : pass0510@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강증진과(☎ 061-659-4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전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64세 이하 시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이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인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택예방접종		☐ 대상포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 기타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u>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 2025 - 2684호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8.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 불일치로 인한 법적 오류, 혼란 예방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무규정에 따라 조례 반영

2. 주요내용

- (안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신설
 - 시장은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안 제12조 3항) 가지치기 진단조사 실시 신설

-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안 제17조 4항) 납부고지 징수방법 신설

-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 관련 법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5. 9. 8. ~ 9. 2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7일까지 여수시장(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산림과

(59683,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659-5851),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제2조 <삭제 2021. 4. 12.>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관할하는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4. 1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 및 도시숲등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② 시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 4. 12.]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조성 장소) ① 시장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도시숲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

1. 4. 12.>

1. 생활주변 및 도로변 자투리땅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간
3. 그 밖의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 4. 12.>

② 가로수의 조성·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지방도·시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먼도·이도 <개정 2021. 4. 12.>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접도구역(接道區域)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 주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제7조(조성방법) ①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1. 수목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식재하되, 조경수로서 가치가 높은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식(混植) <개정 2021. 4. 12.>

2.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수목형이나 산림형으로 조성 <개정 2021. 4. 12.>

3.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계절 및 경관을 고려하여 관목과 초화류를 적절히 혼식 <개정 2021. 4. 12.>

②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며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③ 수목을 보도 및 그 주변에 식재하는 경우 이동차량 및 제설제 등으로부터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식재한다.

제8조(지형·토양의 보호) ① 도시숲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에서 수

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② 가로수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에서는 지형을 변경하는 절·성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2.>

1. 주변에 시각적 차단이 필요한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 조성이 필요한 경우의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성토

4. 그 밖의 도시숲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개정 2021. 4. 12.>

③ 도시숲등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踏壓) 또는 오염 등으로 척박화 되어 수목의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施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④ 수목의 식재나 지형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보도 폭을 기준으로 설치·관리한다.

<개정 2021. 4. 12.>

② 도로가 신설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도로관리 부서는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교체할 수 있다.

제10조(병충해 방제)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1.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병충해 방제작업 계획 고지 <개정 2021. 4. 12.>
2.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퀴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제를 우선하여 실시 <개정 2021. 4. 12.>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제로는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 이 경우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4. 12.>

제11조(수목의 교체) ① 도시숲등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바퀴심기 또는 메워심기(이하 “바퀴심기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교체한다. <개정 2021. 4. 12.>

1. 고사된 수목
2. 나무껍질 또는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 2020. 10. 12.>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 또는 재해·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5. 그 밖의 시장이 바퀴심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개정 2021. 4. 12.>

② 제1항에 따른 바퀴심기등은 현지를 조사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실시한다. | 개정 2021. 4. 12.>

제12조(가지치기) ① 수목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

려하여 가급적 자연형이 되도록 실시한다.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의 유지
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3. 보행자, 자동차 등의 통행공간 확보
4. 기타 전기·통신시설물의 피해예방 등

② 가지치기를 실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이수
2. 조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서 교육 이수

③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가로수 점검) ① 시장은 매년 11월에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식재 또는 바뀌심기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뀌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파악
2.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파악
3. 수목의 병충해 감염여부 확인
4. 수목의 생육상태 및 토양상태 확인
5. 그 밖의 수목의 신규식재 가능 장소 확인 등 <개정 2021. 4. 12.>

제3장 도시숲등의 협의 및 승인

제14조(협의 등) ① 도로관리 부서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획단계부터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신설, 변경 또는 폐기하여 산지 및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안전시설물이나 통신·전기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가 새로이 포장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② 가로수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등에 관한 적정성 여부
4.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여부
6. 그 밖의 관련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 <개정 2021. 4. 12.>

제15조(승인신청)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이식 또는 제거
3. 가로수의 가지치기
4. 그 밖의 도시숲등 조성 및 시설물 관리 <개정 2021.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조성·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신청 요청을 받는 경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출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신청인이 납부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가로수 관련 시설 등을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cm 또는 흉고직경 18cm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여수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숲등 조성으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1. 4. 12.>

④ 시장은 도시숲등등 관리시설물이 자동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제17조(납부 고지)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원인자에게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원인자가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승인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18조(설치)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 4. 12.>

1.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3. 그 밖의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2021. 4. 12.>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숲등 관련 전문가 <개정 2021. 4. 12.>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 4. 12.>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1. 4. 12.>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제2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림등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 4. 12.>

제23조(대리참석)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2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에 태만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1. 도시숲등 병충해 발생신고 <개정 2021. 4. 12.>
2. 도시숲등에 재해발생 시 필요한 협조 <개정 2021. 4. 12.>
3. 가로수 물주기 등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사항
4.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신고
5. 그 밖의 도시숲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4. 12.>

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개정 2021. 4. 12.>
2. 가로수 등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21. 4. 12.>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급 <개정 2021. 4. 12.>

제26조(감독) 가로수의 식재·이식 또는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관리는 담당 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1. 4. 1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 ---- ----- -----.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 (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 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

제12조(가지치기) ①·② (생략)

<신설>

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가지치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제17조(납부 고지) ① ~ ③ (생략) <u><신설></u>	<u>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 조사 결과는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 제17조(납부 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u>
--	---